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MZ Area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김 영 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 문 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단어 :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접경생물권보전지역, 교류협력지구,

목 차

I. 서 론

II.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1. 개념 및 형성배경
2. 공간적 특성

III.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비무장지대의 관리 기구
2. 남북한 비무장지대 공동관리 추진현황
3. 관리상의 주요 현안

IV.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1. 활용여건의 조성 및 추진방안
2.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
3. 제도적 지원방안

V. 결 론

I. 서론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토 이용의 유보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우수한 지역이 많은 반면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계 청소 등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지역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남북한은 지난 70년대 초부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가능성을 찾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²⁾ 특히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 이산가족 등이 상봉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과 평화시 건설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한 무장지대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경의·동해선 철도 및 국도 1·7호선 연결사업 외에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금강산 관광의 실현과 육로관광으로의 발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진전,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망 연결사업의 지속적 추진, 개성공단 착공 등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이후 지난 50년 동안 사람의 출입과 개발이 금지된 지역으로서 한편으로는 생태계가 크게 훼손된 후 다시 복구됨에 따라 생태계 연구에 큰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보전지역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둘째는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남기자는 의견이다. 민족 상잔의 비극의 현장을 민족적 비극의 유산으로 삼아 통일 이후에도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 공간으로 승화시키자는 주장이다.

1) 차종환·제성호·김병우, 2000.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145쪽

2) 정부 차원의 공식 제안은 1972년 2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이 발표한 대북성명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유엔군측 제안(로저스 수석대표)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내세우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안하였다.

동시에 비무장지대는 남북통일의 전초기로서, 화합의 장소로서 평화시를 건설한 다든지 통일 이후 새로운 수도의 입지로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세번째는 합리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남북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자유 무역지대 및 평화공업단지 건설, 생태공원 조성, 대단위 농장 건설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견해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친 활용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보전과 활용,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충족시키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비무장지대의 형성과 공간적 특성

1. 개념 및 형성배경

일반적으로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라 함은 국제법에서는 일정한 국가영역(육지, 영해, 하천, 운하, 영공 등)에 군대 또는 무기를 주둔·배치하지 않거나 군사적 시설물을 설치·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무장화의 개념과 범위는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의 변화, 무기개발 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으로 변천하여 왔다. 본래 비무장화의 개념은 제한된 지역에 군대주둔과 동 군대에 대한 무기제공을 금지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부분적 비무장화(partial demilitarization)라고 한다.³⁾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간에 체결된 정전(휴전) 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남과 북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정전 협정의 제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⁴⁾을 확정하고 쌍방이(남과 북) 이 선으로부터 각각 2 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3) 차중환·제성호·김병우. 전계서. 36쪽

4)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따라 매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이다.(김영봉·이문원·이성수. 2003.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8쪽)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1조 3항에서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1항과 3항에 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⁵⁾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 설치의 목적은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그 역할은 군사적 완충지대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감시체제하의 격리공간을 둬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상황을 중심으로 육지 248km(155mile)에 군사분계선(강화군의 말도에서 고성군의 명호리를 잇는 선)이 획정됨에 따라 이 선으로부터 각각 남북으로 2km범위까지의 지역에 비무장 지대가 설치되었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으로는 정전협정 제19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항~제43항에 의해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주된 관리책임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2. 공간적 특성

1) 지형적 특성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서해안지역과 한탄강·북한강 상류의 내륙지역, 그리고 태백산맥의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북부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동·서 단면은 기본적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부의 급사면과 서부의 완경사면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⁶⁾ 비무장지대도 지형적으로 동고서저의 우리나라의 일반적 지형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부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한강하구로서 평야지대 및 해안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부지역은 광주산맥이 가로놓여 있어 복잡한 산악형 지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발달하고 있어 고지대와 동해 해안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부산악 및 동부해안지역(고성군 일대)은 태백산맥의 북부와 동쪽 해안사면에 위치하며 표고 1,000~1,700m의 장년산지가 주능선을 이루어 험준한 지세를 나타내고

5)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이라는 주장외에 「한국과 참전 16개국」, 또는 「유엔」 만이라는 주장도 있다.(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54쪽)

6)앞의 책, 118쪽

동부해안지대는 모래해안이 주를 이루며 내륙은 100~200m이하의 완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해안선 가까이에 20~30m의 야산이 동해와 접하고 있다.

중동부 내륙 및 산악지역(인제군, 화천군 일대)은 향로봉(1,296m), 건봉산(911m), 칠절봉(1,172m), 가철봉(1,242m) 등 1,000m내외의 높은 산이 분포하고 경사도도 높다. 중서부내륙지역(철원군, 연천군, 일대)은 백마고지(395m), 철원평야 주위의 서방산(717m), 천덕산(420m), 야월산(410m) 등의 준산지가 있고 대부분 표고 400m이하의 야산 구릉지와 평야지가 분포하고 있다.

서부해안지역(과주시, 김포시, 강화군 일대)은 해안 야산성 산지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임진강 중·하류지역은 충적 평야지대와 하구 저습지가 발달하여 있다.

비무장지대를 관류하는 하천은 동해로 흐르는 남강과 서해로 흐르는 북한강 및 임진강, 그리고 한탄강이 있으며,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하천들이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흐르고 있다.

2) 토지이용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총 토지면적은 90,703ha로 산정되었고, 북한지역이 남한지역보다 431ha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의 토지는 산림지역이 75.5%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지가 20.3%, 농경지가 2.8%, 습지 1.1%, 나지 0.1%, 수역 0.2% 등이다. 농지의 경우 3/4이상이 북측에 분포하고, 주로 서부 비무장지대, 특히 판문점과 대성동마을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경우 남측지역은 비무장지대 내외의 토지이용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나 북측은 산지개간에 의해 농지가 조성되었거나 황폐지로 전환된 것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1〉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형태

(단위 : ha, %)

| 구분 | 남 측 | | 북 측 | | 계 | |
|-----|--------|--------|--------|--------|--------|--------|
| 산림 | 35,017 | (77.6) | 33,480 | (73.5) | 68,497 | (75.5) |
| 농경지 | 588 | (1.3) | 1,907 | (4.2) | 2,495 | (2.8) |
| 초지 | 9,091 | (20.1) | 9,324 | (20.5) | 18,415 | (20.3) |
| 습지 | 226 | (0.5) | 806 | (1.8) | 1,032 | (1.1) |
| 나지 | 86 | (0.2) | 12 | (0.0) | 98 | (0.1) |
| 수역 | 129 | (0.3) | 37 | (0.1) | 166 | (0.2) |
| 계 | 45,136 | (100) | 45,567 | (100) | 90,703 | (100) |

자료 :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3) 산림유형 및 현황

비무장지대의 산림은 크게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및 관목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임상별로는 혼효림이 전체산림 중 약 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 주로 활엽수림과 관목림이, 동부지역에 혼효림과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쪽 산림은 인접지역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북쪽은 산림의 훼손이 심하여 남북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임상별, 소밀도별 임목축적량을 추정한 결과 총 임목축적량은 150만 m^3 로 나타났고 그 중 남한지역이 북한지역보다 약 6만 m^3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임목축적량은 27 m^3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남북한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사계청소 등 군사목적에 의한 지속적 산림훼손과 산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식물상 및 식생

비무장지대는 산불과 시계청소 등 서식지의 지속적인 교란으로 대부분 2차림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간의 간섭이 없는 고산 및 저습지가 많고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교차하여 서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식물상은 한국특산식물 금강초롱꽃, 정향풀 등 1,000여종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곶양지꽃, 흰소영도리, 흰패랭이꽃 등도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산림청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동부산악 및 동해안지역에서 흑삼릉, 부채붓꽃, 정향나무 등 12과, 12속, 11종, 2변종 등 총 13종류가 발견되고, 중서부내륙지역에서 삼지구엽초, 낙지다리 및 붉은인가목 등 3종류와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모새달, 두루미천남성, 개상사화, 대청부채, 사철난, 검팽나무, 쥐방울덩굴, 낙지다리, 모감주나무, 토현삼, 초종용 등 11종류가 조사되었다.

Ⅲ. 비무장지대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비무장지대의 관리기구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의 부산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 비무장화된 완충지대의 성격을 갖게되었으나 국토활용 측면에서는 유보지역의 성격을 가진 채 그 동안 제대로 된 현황조사나 활용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현

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측면의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에 의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가 아닌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와 비무장지대의 유지를 위한 감시기관에는 정전협정 자체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구와 남북한이 각자 군사적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감시기구가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국제기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정전협정 제2조 19항~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정전협정 제2조 36항~43항)가 있으며, 남북한이 설치한 감시기구는 남북한 각자가 운영하는 민정경찰이 있다.⁷⁾

1)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 외에도 비무장지대 내 표식물 건립에 대한 감독권,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갖는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출입허가를 받은 자의 민사행정, 경찰 인원수 및 휴대무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필요한 규정을 작성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협조를 받도록 하였고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에 따른 감독 시 상호 협조하는 것이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에 규정된 양대 감시기구 중의 하나로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2명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스위스, 스웨덴, 다른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장교가 각각 임명되었다.⁸⁾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첫째,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인원과 작

7)1995년 3월이래 비무장지대 관리를 책임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북측 구성원이 북한의 요구로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8)체코는 1993년에, 폴란드는 1995년에 각각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물자의 반입에 대한 감독과 시찰실시, 둘째,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와 시찰활동, 셋째, 중립국 시찰소조편성·운영 및 시찰소조활동 결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았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각 조당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영관급으로 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선정하고,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선정한다.

2. 남북한 비무장지대 공동관리 추진현황

비무장지대의 공동관리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부를 남북이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의 착공 등에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다. 그 후 2003년 2월 11일에는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남북이 왕래하게 되고 한정된 지역에서나마 공동관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03년 5월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남북철도 궤도 연결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3년 6월 14일에 분단반세기 동안 끊어져 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를 남북이 동시에 연결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상호화해와 평화의 여건을 조성한 역사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제8차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왕래하는 인원·물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북은 2004년 상반기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차량운행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교통망 통과지역 일대가 남북한 공동관리지역으로 추진되고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되어 비무장지대의 공동관리를 위한 기틀을 놓았으며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와 설악산과의 연계개발, 개성공단의 착공과 남북연관산업의 협력여건 조성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관리상의 주요 현안

1) 정전협정 위반 실태

한국정전협정의 서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들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은 정전협정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화하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2 km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지상태를 보면, 군사분계선 북측의 경우 북한이 정전협정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 이남에 철책선을 가설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여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비무장지대 내에 철책선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에서 비무장지대 내로 1 km~1.5 km까지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고, 남한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 까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지역은 그 이상까지 들어가 설치된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각각 2 km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비무장 규정의 준수 상태를 살펴보면, 북한측의 경우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근거리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 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는 각종 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4개의 갭도(땅굴), 29.4km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⁹⁾

남한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내 주요지점에 제한된 수의 GP 와 O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한측은 GP 및 OP 100개소, 107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다.

9)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9쪽.

〈표 2〉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구축 및 장비배치 현황

| 구 분 | GP/OP | 방송시설 | 철책선 | 지원시설 | 박격포 | 고사포 | 대전차포 | 기타 |
|-----|---------|------|--------|---------|-----|-----|------|-----|
| 북 한 | 158/124 | 117 | 260 km | 3,362 동 | 234 | 92 | 28 | 316 |
| 남 한 | 87/13 | 107 | 290 km | 1,209 동 | - | - | - | - |

자료 :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비무장지대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체결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인원, 장비, 시설 등 중무장시설들을 철거하여 순수한 비무장지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2) 정전체계의 한계와 관리상의 문제점

군사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정전협정의 빈번한 위반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정전협정 내에 협정위반사건의 억제와 시정을 위한 강제규정 및 그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전협정 내용의 수정과 증보 등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 위반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 내에 이 협정의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간에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953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 중 북한측의 실제 위반 건수는 408,739건이나 북한측이 인정한 위반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상기 기간 중 유엔군측의 실제 위반건수는 16건에 불과하나 북한측은 454,605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된 적은 거의 없었다.

10) 제성호. 1997.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 학술회의 발표논문. 5~6쪽.

셋째, 정전협정에는 일반적인 비무장 의무를 규정할 뿐 비무장지대 내에 시설설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과 금지되는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분명치 않은 규정을 악용하여 비무장지대 내에는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군사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 준수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전협정위반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전협정은 비무장상태의 유지라는 군사적 측면의 접근 외에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활용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남북한의 공동활용 정책은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과거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경과한 현재 비무장지대는 비교적 우수한 생태계를 비롯해 연구와 활용이 필요한 국토의 특이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최근 남북한간에 합의되고 추진 중인 교통망 연결 및 금강산관광, 임진강수해방지 대책 등을 기초로 하여 비무장지대의 현황조사와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IV.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1. 활용여건의 조성 및 추진방안

1)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실현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한국전쟁협정 제1조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방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제2조 13항에서는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력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현재와 같은 비무장지대의 쌍방의 군사시설 구축 및 장비의 배치(표 2)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전협정상에 명시된 비무장지대의 복구가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북한측이 1970년대 후반에 설치한 제2세대 철책선의 북방한계선 밖으로의 철거와 남한측의 비무장지대 진입 철책선의 남방한계선 밖으로의 철거가 우선되어 비무

장지대가 정전협정체결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비무장지대내의 모든 군사시설과 장비, 인원의 철수를 단행함으로써 완전비무장화, 비군사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이 비무장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재 배치된 병력배치, 군사시설, 지형조건 등 관련자료에 의한 군사시설을 점검하고 철수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군비제한 및 축소를 포함한 군이 통제, 실사하고 철수·철거된 군사 인원·장비·시설은 후방으로 재배치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새로운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생태계 보전 및 자연재해 공동대처

비무장지대(동서 248km, 남북 4km, 면적 약907km²)의 생태계의 보전과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은 귀중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연구에 매우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대는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동시에 2001년 환경인 신년인사회(2001.1.16) 및 환경부 업무보고(2001.2.5)에서 당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추진이 힘을 받게 되었다.¹¹⁾

따라서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합의를 거쳐 남북한 공동 생태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용도구획 설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신청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요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보전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진강 수계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남북의 상호 협력에 따라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¹²⁾ 또한 산불의 방지 및 공동진화와 금강산 일대의 솔잎혹파리 등과 같은 산림의 병충해를 공동으로 방제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질과 대기질 악화 등 환경오염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1)내용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류전체의 자산인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인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남북환경협력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임

12)최근 남북한은 제8차 남북경제실무회담에 따른 실무협의체인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실무협의회에서 임진강수계의 홍수방지를 위한 자료협조 및 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2004. 4. 10. 연합뉴스)

3) 자원공동활용

첫째는 수자원 공동 활용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흐르는 임진강은 그 유역에 다목적 댐을 남북공동으로 건설하여 수도권지역과 북한의 황해도지역에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전력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임남댐의 방류수를 평화의 댐에서 저수할 경우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양 댐의 연계수로에 주운을 도입하면 중부 내륙지역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관광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둘째는 관광자원의 활용이다.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여 금강산에서 화진포, 설악산을 연결하는 산악과 해안, 호수 등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와 인접 지역의 희귀 자연생태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판문점을 비롯한 민족상잔의 역사유적지를 민족역사교육장으로 조성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유적이 풍부하다.

셋째는 해양 및 지하자원의 공동활용이다. 동서해안의 광활한 어로 금지구역에서의 남북한 공동어로 작업과 서해안 연안지역의 대륙붕 내 지하광물자원의 공동개발 등은 남북한의 협력이 가능한 사업이다.

4) 남북교통망 복원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며 단절된 국토를 연결한다는 의미와 함께 육상을 통한 남북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 주요교통망의 연결은 동북아지역에서의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대륙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여 동북아지역의 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반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해상 물류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수송시간과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북한의 경우 통과료를 부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한반도중단철도(TKR)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5) 농업용지의 공동 활용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남북접경지역은 서부지역의 경우 해방 전까지만 해도 광활한 평야에서 활발한 영농 활동이 이루어 졌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는 총면적 907.03km²로 이중 산림 684.79km², 농경지 24.95km², 초지 184.15km², 나대지

0.98km², 기타 11.98km²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 그리고 철원군의 평야는 비무장지대의 광활한 평야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남북이 공동으로 농업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¹³⁾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남한측은 농산물종자와 농기계, 그리고 비료 및 병충해 방지 약품 등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고 북한은 농산물관리와 기타 노동력을 투입하는 상호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고려할 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다.¹⁴⁾

6) 교류협력지구 조성

도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풍부한 토지자원과 주요 국도 및 철도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파주지역, 철원지역, 고성지역 등에 교류협력지구를 건설하여 남북한 인적, 물적 교류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지구는 통일전의 남북교류협력기에는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자유경제무역지역으로 발전시켜 통일 후에 동북아 지역의 중추적인 경제교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해의 북방한계선 인접에 있는 주요도시들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 및 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북 평화와 화해의 섬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

1)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지형은 태백산지를 중심으로한 동부의 급사면과 서부의 완경사면이 비대칭으로 나타나고, 동부지역과 중부지역은 산악이 발달하여 수목 등의 생태계가 우수하고 서부지역은 철새도래지, 습지, 희귀 담수어, 해안 갯벌 등 다양한 생태자원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추진가능지역은 비무장지대(동서 248km, 남북 4km, 면적 약907km²)와 민간인통제선 북방의 생태계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남북한 비무장지대로부터 각각 2km까

13)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현황은 산림청이 199년 5월 원격탐사방법으로 실시한 개략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14) 최근 북한은 식량배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과 계층에서 유지되던 식량배급제도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각 언론. 2004. 4. 8~9일 보도 참조)

지를 주 대상으로하여 추진한다.

남북한이 환경협력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추진에 대한 남북공동합의를 도출 실무반을 구성 남북한 공동의 생태계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용도구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신청하여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한 간접적 환경협력을 통하여 DMZ TBR(DMZ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홍보하고, 북한당국 및 학자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2단계는 실현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북한 당국이 협의하여 환경협력을 활성화한다. 3단계는 남북한간에 공동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DMZ TBR을 유네스코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도록 한다.

2) 교통망복원 및 에너지공급망 연계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의 교통망 복원은 대륙과 해양의 연계를 가능케 함으로서 동북아지역 내에서 국가간, 지역간, 도시간을 이어주는 동북아내의 전략적 관문으로 육성시킬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은 대륙과도 연결이 가능한 간선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연결하여야 할 것이다.

1단계는 현재 진행중인 목포에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과 연결해 주는 국도1호선과 7호선, 경의선 및 동해북부선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관통 간선 교통망을 복원하고, 2단계로 국도 3호선과 7호선, 경원선 철도를 연결시켜 북한의 내륙과 동해안 주요지역을 연결하여 이를 러시아의 연해주를 거쳐 대륙과 연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지역간 교통망인 국도5번, 31번, 43번을 복원하고 나아가 동해북부선과 금강산선을 연결시켜 국토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통망의 연계와 동시에 북한의 시급한 전력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전력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송전망의 연결은 서부 파주 지역에서 개성지역으로 연결하는 1단계와 철원에서 평강으로 연결하는 2단계, 그리고 고성에서 금강산 쪽으로 연결하는 3단계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교통망 및 송전망의 연결시 충분한 환경평가를 통하여 기존 철도와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되 귀중한 생태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지역별 협력사업 추진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내의 교류협력지구는 국토통합 이후에도 남북간 주요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교통축을 감안하여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변지형이 평지 및 구릉지로서 개발가능 면적이 도시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 생활권의 중심지이자 주변지역의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을 주요 교류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남북한 연계관광개발과 자원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이 가능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지구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지역은 먼저 서해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는 남북이 해상과 도서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은 남북분단 전에는 생활권이 북한의 연안지역 및 주변도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요 산업인 어업과 농업의 상호협력과 물자 교류협력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연안지역인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평야지대로써 철도·도로와 주변 임진강을 활용한 주운을 도입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배후지에 도시가 발달하여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여 평화시 및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대단위 농업개발지역 등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부내륙지역인 철원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변에 광활한 평야가 발달하여 남북농업개발사업과 물류센터 등을 개발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족문화역사관과 평화생태도시로 육성하고 교통망을 정비하여 수도권 위성도시들과 연결하여 기능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내륙지역인 양구와 인제지역은 주요 생태자원과 금강산 관광의 내륙관문으로서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의 생태자원의 공동조사 및 생태관광자원의 공동활용으로 남북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해안지역의 고성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으로는 금강산 남쪽은 설악산,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와 계곡, 동해의 푸른 바다와 해변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해와 동해에서의 공동어로 및 자원공동개발, 평화의 댐과 금강산댐의 수자원 공동활용 등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다.

〈표 3〉 교류협력지구 후보지 및 주요 기능

| 구 분 | 사 업 내 용 |
|---------|---|
| 서해도서 지역 | ·위치: 백령도, 연평도 ·기능: 공동어업진진기지, 남북경제교류거점(평화의 섬), 공동해양개발센터 |
| 서부연안 지역 | ·위치: 파주시 장단면 일대 ·기능: 남북교류협력지구, 남북농업개발사업, 물류센터, 국제교류센터 |
| 서부내륙 지역 | ·위치: 구철원 일대 ·기능: 남북교류 및 평화생태도시, 물류센터, 민족문화역사관, 남북농업개발사업, 금강산 관광 서부관문 |
| 중부내륙 지역 | ·위치: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일대 ·기능: 비무장지대 자연생태연구소,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시설, 금강산 관광 내륙관문 |
| 동부해안 지역 | ·위치: 고성군 현내면 일대 ·기능: 관광거점, 남북경제교류거점, 공동해양개발센터 |

3. 제도적 지원방안

1) 정전협정의 보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이용에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제한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나아가 남북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활용에 있어서 군사정전위원회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무장지대 출입, 군사분계선 통과, 비무장지대내 북측지역 진입 등이다. 비무장지대내로의 출입은 정전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의 비무장지대 출입은 인정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내의 출입 가능한 인원은 이산가족, 경제인, 예술인 등 일반시민이 될 것이나 이들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분계선의 통과에 대한 정전협정상의 내용은 적대적 쌍방에 대하여 군인인지, 시민인지를 불문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7항).”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절차상의 대폭적인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비무장지대의 북측지역의 진입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거나 그가 출입하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8항).” 이와 같은 정전협정상의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바 먼저 이 문제를 관할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전담하는 실무협의회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남한은 군사정전위원회와 군사공동위원회간의 관계설정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준수·이행의 감독 및 위반사항 발생시 해결기구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공동위원회는 주로 불가침 관련 남북한간의 합의 사항 이행·실천, 불가침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각각 기능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비무장지대의 방대한 국토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국토에서의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 활용은 경험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은, 지역의 지형과 지세, 자연환경, 그리고 국토에서의 위치와 주변의 정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동안 특수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활용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역 선정이 남북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통망 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공동어로작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비무장지대로 단절된 남북한 국토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 나아가 수자원 공동활용, 생태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의 공동조사 및 보전작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공동활용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망 복원과 연계하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에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 중심지대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수립과 남북한의 평화적 활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통일 후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2.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 김영봉. 1997.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 1998.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 이상준·이문원 외. 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 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 이문원·이성수 외. 2003.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 김인영·김재한 편. 1999. DMZ -발전적 이용과 해체. 도서출판 소화.
- 김재한 편. 2000. DMZ II-횡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도서출판 소화.
-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2.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
- 산업연구원. 1995.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 세종연구소. 1997.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 이문항. 2001. JSA-판문점(1953~1994). 도서출판 소화.
- 임업연구원. 2000.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 정규서 외. 2002.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 제성호. 1996.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 1997.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제2회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DMZ학술회의발표논문.
- .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 차종환·제성호·김병우. 2000. 한국 비무장지대의 식물생태. 예문당
- Kim, Ke Chung. 1997. Preserving Biodiversity in Korea's Demilitarized Zone Science 10 October 1997.
- . 1999. "Korea's Beleaguered DMZ Ecosystems: Unique Sanctuary for Threatened Species" The 1st Annual Conference of DMZ Forum, Asian Society. New York in March 20. 1999.
- Ginsberg, Josh. 1999. "Ecosystems of the Asian Far East: Assessing the Importance of the DMZ" The 1st Annual Conference of DMZ Forum, Asian Society. New York in March 20. 1999.
- Scalapino, Robert A. 1999.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DMZ Political-Security Issues," The 1st Annual Conference of DMZ Forum, Asian Society. New York in March 20. 1999

- ABSTRACT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MZ Area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Young-Bong Kim · Moon-Woun Lee

※Keywords :DMZ, MDL, TBR, Inter-Korea cooperation zone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ncrete plans on inter-Korea cooperation such as cooperative use of resources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South-North interchange cooperation area designation, and

co- operation projects toward appropriate and rational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peace settlement with strengthened foundation of inter-Korea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t tries to examine traffic network connection,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cooperative use of water resource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tourism, and fishery industries, exhum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as cooperation and interchange projects to be promoted in the DMZ.

The inter-Korea cooperation zones include the Baekryeong-myeon area and Yeonpyeong-myeon area in Ongjin county, the Gyodong-myeon area in Ganghwa county, the Jangdan-myeon area in Pajoo city, the Cheolwon-eup area in Cheolwon county, and the Hyeonnae-myeon area in Goseong county.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s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DMZ, the limitations of present system are analyzed at first,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modified or newly enacted.

